

제4장 예산 이용 · 전용 · 이체사용

「지방재정법」 제47조,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2025 회계연도

기간 중에 예산을 이용 · 전용 · 이체사용한 것은

-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|
| 1. 예산이용(| 0 건) | 0 원 |
| (1) 일반회계는(| 0 건) | 0 원 |
| (2)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| | |
| 총괄은(| 0 건) | 0 원 |
| 2. 예산전용(| 3 건) | 304,470,000 원 |
| (1) 일반회계는(| 3 건) | 304,470,000 원 |
| (2)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| | |
| 총괄은(| 0 건) | 0 원 |
| 3. 예산이체(| 12 건) | 2,749,578,000 원 |
| (1) 일반회계는(| 12 건) | 2,749,578,000 원 |
| (2)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| | |
| 총괄은(| 0 건) | 0 원 이며 |

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.